

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5. 6. 8 규칙 제78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상금 지급기준) 「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용인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(제2조 관련)

1. 홍보활동비

구분	시간	지급액		비고
		연예인 또는 유명인사	일반 시민	
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	4시간 미만	100만 원	20만 원	
	4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200만 원	30만 원	
	8시간 이상	300만 원	50만 원	

2. 홍보물 출연료

구분	횟수	지급액	비고
홍보 영상물	1회	300만 원	
홍보 광고(CF)	1회	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급	